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5489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5489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가소6635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표

피고, 피항소인1. 유한회사 B

2. C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윤근

피고들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변론 종결2024. 9. 12.

판결 선고2024. 10. 24.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가소66353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09,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2024.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699,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피고 C는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법인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1. 15.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2020. 1. 29.경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계좌들과 연결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고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 C는 계속해서 2020. 2. 20.경 피고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등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을 개설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등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5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C는 전항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2020. 12. 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1.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0고약8247).

라. 원고는 2020. 3.경 D 등이 운영하는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였는데, 위 'E'은 마치 증권사의 정상적인 주식투자 사이트인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입자들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편취하는 사이트였다.

마. 원고는 D 등의 요구에 따라 2020. 3. 26.부터 2020. 7. 20.까지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로 합계 29,630,486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E'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위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유령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D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 회사는 자신의 대표자인 피고 C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7,699,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행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접근 매체를 양도함으로써 D 등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1)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대포통장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법인 명의 예금계좌는 금융거래자의 신분을 위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②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사회에 만연해 있고, 그와 같은 사기에 통장 등 접근매체가 악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 C는 금전적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까지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는바, 피고 C는 이 사건 각 계좌 및 접근매체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취금을 수령하는데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바,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이러한 금융사기범의 범행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④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법인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다는 것인바, 피고 C는 이 사건 각 계좌가 적어도 탈세 등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인다.

⑤ 피고 C는 자신이 대여한 이 사건 각 계좌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2021. 8.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2024. 5. 8.자 피고의 답변서 참조).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련된 여러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문자나 카카오톡, 인터넷 채팅 등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말을 쉽게 믿고 그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거액의 돈을 단기간에 송금한 점, 이 사건 각 계좌의 명의인인 피고 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E'이란 업체는 상호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E'에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 밖에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30%로 제한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309,944원(= 17,699,814원 × 3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9.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명재권

판사이민수

판사송승용

1)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다.